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제9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5. 3. 24)

1. 심사경과

가. 2005. 3. 17 : 사천시장제출

나. 2005. 3. 18 : 총무위원회 회부(의안번호 제12호)

다. 2005. 3. 24 : 제9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총무과장 최학림)

가. 제안이유

- 1) 재난·방재기능 통합으로 현장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재난전담기구를 신설하여 지역개발국에 편제하고,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담당기능으로 축소, 여유기구인 지역전략사업추진단으로 전환하여 부시장 직속으로 편제함.
- 2) 담당관의 업무분장을 관련법규에 맞게 규칙으로 조정하며, 기구와 정원관리기준 등의 규정개정에 따라 여유기구조항을 신설하기 위함.
- 3) 또한,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한 한시기구(주민자치과)가 여유기구로 대체됨에 따라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재조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 재난전담기구와 여유기구 신설 등에 따른 국별 부서 편제 및 분장사무 조정
 - ▶ 국 및 담당관·단장 계서체계
 - 총 무 국 : 8개과 → 7개과(주민자치과 폐지)
 - 계서체계 : 총무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 지역개발국 : 7개과 → 8개과(재난안전관리과 편제)
 - 계서체계 : 지역경제과, 해양수산과, 도시건축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교통과, 수도과, 녹지공원과(8개과)
- 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보좌기관
 - 계서체계 : 기획담당관, 정보담당관 → 기획담당관, 정보담당관, **지역전략사업추진단**

▶ 분장사무 조정

- 총 무 국 : 읍면동 기능전환 등 주민자치과 업무 이관 → 지역전략사업추진단
- 지역개발국 : 재난방재·복구 및 민방위 업무 흡수
- 지역전략사업추진단 : 읍면동 기능전환업무 및 대외업무 벤치마킹, 골프장유치 등 업무

2) 담당관 사무분장 규칙에서 규정(조례 → 규칙으로 이기)

3) 한시기구 존속기한 재규정

- 주 민 자 치 과 : 존속기한 2005. 6. 30까지 → 폐지
- 행정타운사업소 : 존속기한 2006. 12. 31까지

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 지역보건법 및 같은법 시행령
- 농어촌법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여유기구제의 도입 등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문필상)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에 따른 재난·방재기능 통합으로 현장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재난전담기구를 신설함으로써 지역개발국이 7개과에서 8개과로

조정되고,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담당기능으로 축소하여 여유기구인 지역전략사업추진단으로 전환함으로써 총무국이 8개과에서 7개과로 조정되어 국에 속하지 않는 기획담당관, 정보담당관, 지역전략사업추진단은 부시장 직속으로 편제하였으며, 담당관의 업무분장을 관련 법규에 맞게 규칙으로 조정하고,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 존속기한을 2005년 6월말로 행정타운사업소 존속기한을 2006년 12월말로 재규정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써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여유기구제 도입 등 기구정원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을 검토한 바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도 법적인 문제점 없고, 시행에도 특별한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위원	질의 요지	답변자	답변 요지
김현철 위원	○ 현재 재난관리과의 신설도 중요하지만 도시와 건축을 분리하는 것도 우선 순위로 볼 때 더 시급함.	총무과장 최 학 림	○ 행정타운조성사업소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음. 행정타운조성사업소를 폐지함과 동시 도시과와 분리시킬 계획임.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7. 소수 의견 : 없음